

계약갱신 요구서

(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 조의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통지)

수신인	임대인 성명	연락처	
발신인		연락처	
목적물	주소·동·호수		
계약일	년 월 일	임대차 기간	... ~ ...
보증금	원	월차임	원

임차인은 위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 조의 3 에 따라 계약의 갱신을 요구합니다.

1.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 년으로 하며, 그 밖의 조건은 종전 계약과 같습니다.
2. 보증금 또는 차임을 올리는 경우 그 증액은 종전 금액의 5%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(같은 법 제 7 조 제 2 항).
3. 임대인은 같은 법 제 6 조의 3 제 1 항 각 호의 사유(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)가 없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.
4. 임차인은 갱신된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,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.

임차인의 요청 · 회신 요청 사항

예) 갹신 조건(보증금·월세 유지 또는 증액 금액)을 년 월 일까지 문자 또는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이
이
이

임차인(발신인) : (서명 또는 인)

※ 계약갱신요구권은 1 회만 쓸 수 있으며,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 개월 전부터 2 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.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도달 날짜가 증명됩니다.